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 - 66호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 과정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1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2,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붙임자료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 및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 및 추진 전략
2.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 홍보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신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관련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3. 소상공인 창업에 필요한 상담, 자문, 교육 등 지원
4. 홍보, 디자인,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상담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불공정거래 무료 법률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2.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 지원, 상담, 자문, 교육 등
4. 그 밖에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대한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제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타. 중소기업의 육성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소상공인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신고 및 무료 법률 상담,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등을 위하여 상담센터 설치·운영 관련 지원

나. 관련 조문 : 제7조(상담센터의 설치·운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소상공인 상담센터 설립 운영

- 총 사업비 : 150백만원
 - 인 건 비 : 100백만원
 - 시설운영 및 임대료 : 50백만원
- 운영 내용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신고사례 상담 등

나. 추계 결과

○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

- 운영방법 :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 운영인력 : 3명
- 주요역할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상담 및 처리
 -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홍보
 - 법률 상담

○ 소상공인 상담센터 사업비 산출내역

- 총 사업비 : 150,000천원
- 운영인력 인건비(3명) : 100,000천원
- 시설운영 및 임대료(12월) : 50,000천원
- 주요역할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상담 및 처리
 -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홍보
 - 법률 상담

다. 재원조달방안

-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 소요예산에 대한 연차별(5년)균등 배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경 제산업국 생활경제과장 이능환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입	△△△△ △△△△						
	소계						
세출	민간위탁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소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일반회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